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(김남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1548

발의연월일: 2024. 7. 9.

발 의 자 : 김남희 • 김한규 • 김 윤

전진숙 · 김준혁 · 장종태

권칠승 · 고민정 · 이성윤

민병덕 · 남인순 의원

(119]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에 따르면 소송계속 중인 사건의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 등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경우 재판장이 재량으로 허가할 수 있도록 하고,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면서 그에 관한 재판에는 불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.

그런데 열람 또는 등사의 허가 여부 및 그 범위에 대한 판단 기준이 일관되지 아니하고 피해자의 신변보호나 피해회복 등 권리구제에 미흡 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음.

이에 법원이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거부하거나 조건을 붙인 등사 결정에 대하여 피해자 등이 즉시항고를 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,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조건을 붙여 허가한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도록 하여 불복 절차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(안 제294조의4).

법률 제 호
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

형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94조의4제1항 중 "재판장에게"를 "법원에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 하며, 같은 조 제3항 중 "재판장"을 "법원"으로, "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"를 "결정으로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"로 하고,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있다.

제294조의4제5항 및 제6항을 각각 제6항 및 제7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.

제294조의4제7항(종전의 제6항)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 절차 등에 관한 경과조치) 이 법 시행 전에 종전의 제294조의4에 따라 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한 사건에 대해서는 제294조의4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	제294조의4(피해자 등의 공판기
록 열람・등사) ①소송계속 중	록 열람・등사) ①
인 사건의 피해자(피해자가 사	
망하거나 그 심신에 중대한 장	
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	
•직계친족 및 형제자매를 포	
함한다), 피해자 본인의 법정대	
리인 또는 이들로부터 위임을	
받은 피해자 본인의 배우자・	
직계친족・형제자매・변호사는	
소송기록의 열람 또는 등사를	
<u>재판장에게</u> 신청할 수 있다.	법원에
② <u>재판장</u> 은 제1항의 신청이 있	②법원
는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, 피	
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그 취지	
를 통지하여야 한다.	
③ <u>재판장</u> 은 피해자 등의 권리	③법원
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	
정하거나 그 밖의 정당한 사유	
가 있는 경우 범죄의 성질, 심	
리의 상황, 그 밖의 사정을 고	
려하여 상당하다고 인정하는	
때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	결정으로 열람 또는
할 수 있다.	<u>등사를 허가</u>

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을 제한하 거나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 건을 붙일 수 있다. <신 설>

⑤ (생략)

⑥제3항 및 제4항에 관한 재판 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.

- ④재판장이 제3항에 따라 등사 ④ 법원은 제3항에 따라 등사 를 허가하는 경우에는 등사한 소송기록의 사용목적 제한이나 그 밖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.
 - ⑤ 법원은 열람 또는 등사를 허가하지 아니하거나 제4항에 따라 조건을 붙여 허가하는 경 우에는 열람 또는 등사를 신청 한 자에게 그 이유를 통지하여 야 한다.
 - ⑥ (현행 제5항과 같음)
 - ⑦ 제3항 및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 다.